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의원입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17호
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
를 위해 일부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
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,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반
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적·재정
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
는 취지입니다.

-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 활
동 지원 사업을 제9조제1항제10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
에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